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일 시: 2021년 12월 6일 오전 11시 00분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2, 12층(대치동, 엠에스에이빌딩)

주식수 및 의결권 주식수

주주의 총수: 5명

출석주주의 총수: 5명

주식의 총수: 400,000주

출석주식의 총수: 400,000주

의장 대표이사 오대강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주주총회가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에 다음의 부의안건을 심의하다.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정관 변경(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제28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3. 기업경영, 재무 및 인수·합병 관련 자문 4.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5. 국내외 기업, 경제, 산업 및 자본시장의 조사, 연구, 분석 및 용역 제공 6.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부동산, 주식 기타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실채권 등 기타 자산에 대한 투자 7.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및 투자의사결정 지원 8. 자산가치평가 9. 채권매입·매각 및 매입자산의 관리 10.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자문 11.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 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무 12. 기타 위 각 호의 목적달성에 직·간접적으로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제28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3. 기업경영, 재무 및 인수·합병 관련 자문 4.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5. 국내외 기업, 경제, 산업 및 자본시장의 조사, 연구, 분석 및 용역 제공 6.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부동산, 주식 기타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실채권 등 기타 자산에 대한 투자 7.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및 투자의사결정 지원 8. 자산가치평가 9. 채권매입·매각 및 매입자산의 관리 10.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자문 11.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 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무 12.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13. 기타 위 각 호의 목적달성에 직·간접적으로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목적 추가 및 조순 변경

현 행	개 정(안)	비고
부칙 <부칙 신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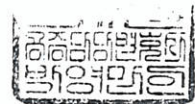
이상으로서 총회의 의안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1년 12월 6일

주식회사 오하자산운용

의장/ 대표이사 오 대 강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021년 12월 2일 오전 11시 00분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2, 12층(대치동, 엠에스에이빌딩)
본사 회의실
3. 출 석 이 사 수 : 이사총수 3명 중 참석이사 3명
출 석 감 사 수 : 감사총수 1명 중 참석감사 1명

의장 대표이사 오대강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본 회의가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의장은 상기 의안을 상정하고 상세히 설명을 한 후 심의를 구한바 출석이사 상호간의 신중한 토의가 있는 후 전원이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시 및 장소

- 1) 일 시 : 2021년 12월 6일 오전 11시 00분
-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2, 12층(대치동, 엠에스에이빌딩)
본점 회의실

2. 회의목적사항

제 1 호 의안: 정관일부개정의 건 (사업목적추가)

현 행	개 정(안)	비고
-----	--------	----

현 행	개 정(안)	비고
(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제28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3. 기업경영, 재무 및 인수·합병 관련 자문 4.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5. 국내외 기업, 경제, 산업 및 자본시장의 조사, 연구, 분석 및 용역 제공 6.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부동산, 주식 기타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실채권 등 기타 자산에 대한 투자 7.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및 투자의사결정 지원 8. 자산가치평가 9. 채권매입·매각 및 매입재산의 관리 10.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자문 11.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무 12. 기타 위 각 호의 목적달성에 직·간접적으로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제28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3. 기업경영, 재무 및 인수·합병 관련 자문 4.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5. 국내외 기업, 경제, 산업 및 자본시장의 조사, 연구, 분석 및 용역 제공 6.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부동산, 주식 기타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실채권 등 기타 자산에 대한 투자 7.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및 투자의사결정 지원 8. 자산가치평가 9. 채권매입·매각 및 매입재산의 관리 10.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자문 11.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무 12.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13. 기타 위 각 호의 목적달성에 직·간접적으로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목적 추가 및 조순 변경
부칙 <부칙 신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장은 금일의 의안을 심의 종료하였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감사 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1년 12월 2일

주식회사 오하자산운용

의장/ 대표이사 오 대 강 (인)



사내이사 최 선 일 (인)



사외이사 이 두 성 (인)



감 사 이 승 후 (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 전

[별지 제33호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

(전화) 02-6743-7001

등부 2021년 제 39924호

인 증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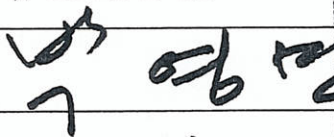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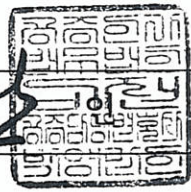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 전

[별지 제37호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

(전화) 02-6743-7001

등부 2021 년	제 39924호
인 증	
위 주식회사 오하자산운용-----의	
2021년 12월 06일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대표이사 겸 주주 오대강, 주주 이민주, 동 에스케이증권주식회사, 동	
이승후, 동 지승환 등의 대리인 권석훈 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	
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	
을 확인 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21년 12월 06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 전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소속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	
공증담당변호사  	
아 래	
1. 공증촉탁서, 2. 진술서, 3. 확인서, 4. 주주명부,-----	
5.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정관-----	